

다. 공인(公人)이론

‘진실성 입증’의 한 예로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으로 성립되어 온 ‘공인이론’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기타 공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된 사실의 당사자인 공인 스스로 ‘당해 보도를 행한 언론사가 그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든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허위로 보도했음을 거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원칙’). 이때의 공인은 공직자는 물론, 국가적 사항에 상당한 책무를 가지거나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 개인의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나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즉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97헌마265)고 하여 공인개념을 공익개념과는 별개의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공인개념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공익과 관련하여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참작해 온 정도이다(배금자 2002). 언론의 비판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공익이 피해를 입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과 공직자에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보다 확실한 입장과 예측가능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당 등 공공기관의 명예를 허용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대표와 구성원들의 명예훼손을 어느 선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배금자 2002).

언론에 대한 공직자들의 명예훼손소송이 ‘은밀한 검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와 공적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없는 언론의 자유는 무의미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자유로운 민주사회도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인정하여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Ⅲ.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 구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잘못된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중재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말 그대로 ‘틀린 보도’를 바른 내용으로 고쳐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에 대한 반론문 게재 등 반박 해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의 형태로 종결될 때 그 사실을 보도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1.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

언론보도에 의한 갈등이 당사자끼리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간혹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 그러나 언론사는 언론보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하며, 보도 후 사실의 오류를 발견할 때는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우선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한 줄의 기사에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기사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상이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언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사’와 ‘정보’를 판단하는 데 다양한 가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전문적일 수도 없다. 그러나 객관성 공정성 등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접근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자의 직업적 실천의 형식으로 터 잡아야 한다. “주장과 반론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데 여기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또한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보도의 정정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잘못을 고치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할 때는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신문윤리강령). ‘틀린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지만 ‘틀린 보도’를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그 배상 인용액도 고액화 현상을 보이는 등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언론사에서는 편집국에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독자위원회’를 두는 언론사도 있다. 심지어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언론사도 있다.

2.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구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신속하게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관련성, 즉 객관적으로 해당보도로 인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나 재산상으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만 문제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차재영 2002).

언론에 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양경승 2001) 중재사건은 매해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중재사건이 많지 않은 편이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3건이 접수 처리됐으나 200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①기자들의 ‘자기검열’로 기사를 작성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는 점 ②문제가 발생했을 시 언론사 스스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론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등이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①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②지역이 좁아 새로운 갈등이 두려워 그냥 참아버리는 점등이다.

언론피해구제의 단일 법령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3. 소송을 통한 구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0년대 이전까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형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언론사나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배상 인용액도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공직자에 의한 집단소송과 배상 인용액의 고액화 현상을 놓고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로 오히려 자유언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인용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IV. 맺음말

언론매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언론에 대해 냉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싫든 그것이 전달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은 언론사가 생산하는 정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마치 현실과 같은 대리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접근은 먼저, 그 영향력이 커진 데 비해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언론 내부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사는 어찌 보면 기자와 취재원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 문화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는 쪽과 취재당하는 쪽 쌍방 간에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언론이 취재 대상자를 단순히 기사작성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전략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아무리 기사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방식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또는 공정성 등의 개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면 ‘공정성’은 ‘책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책임의 감정은 단순히 충동으로만 존재하기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 행위의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인은 진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가”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도 바로 ‘자유언론’의 주장만큼 ‘책임언론’이 도덕적 의사형성의 감정적 요소로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임감의 고양과 함께, 언론에 대한 독자의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격 있